

V - 15	제 목	“최대공급전류”	
회신일자	2001년 9월 25일	회신방법	산자부 사이버민원실
의 요 지			
질의) ○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조제2항에 “저압의 전선로(이하 선을 포함한다.)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(다심케이블, 인입용 비닐절연 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)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2,00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”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“최대공급전류”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.			
신 내 용			
답변) ○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조(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) 제2항의 규정은 저압전선로(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저압 지중전선로)의 절연저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2항에서 말하는 “최대공급전류”는 그 전선로의 전원이 되는 공급변압기의 사용전압에서의 정격전류를 말하는 것입니다.			